

# 창업지원센터 운영내규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창업지원센터의 기능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명칭은 서울신학대학교 창업지원센터(이하 “본 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

**제3조(위치)** 본 센터는 본 대학 내에 둔다.

**제4조(기능)** 본 센터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①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, 강좌, 특강 및 박람회 진행
- ② 창업관련 교과목(수업) 진행
- ③ 대학 내 유관 부서와의 협력 및 연계
- ④ 창업정보제공 및 정부기관 창업지원연계
- ⑤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
- ⑥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
- ⑦ 그 밖에 창업지원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## 제2장 창업지원센터의 조직

**제5조(소장)** 본 센터 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소장은 창업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직무 전반을 통괄한다.

**제6조(직원)** ① 본 센터에는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자격 및 직무 등은 본 대학 관련규정 및 본 센터 내규에 의한다.

② 본 센터에는 근로장학생을 둘 수 있으며 자격 및 직무 등은 본 대학 관련규정 및 본 센터 내규에 의한다.

**제7조(학생모니터링단)** 본 센터의 사업 운영과정 및 성과에 대한 학생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

**제8조(외부전문가)** 본 센터에는 외부전문가를 자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 외부전문가는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

**제9조(운영위원회)** ①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획,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칭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고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③ 본 위원회는 본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
1. 기본 계획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
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3.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 4. 기타 학생의 창업지원관련 추천사항
- ④ 본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제3장 재정

**제10조(재정)** 센터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.
- ② 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교의 보조금, 자체 사업 수입,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- ③ 회계연도의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

**제11조(감사)** 본 센터의 감사는 본 대학교의 감사 규정에 따른다.

**제12조(기타)**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